

사업자용 예금 토큰 전자지갑 특약

제1조(적용범위)

사업자용 예금 토큰 전자지갑(이하 "사업자 전자지갑"이라 한다) 거래는 이 특약이 적용되며,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예금토큰거래기본약관」을 적용한다.

제2조(가입 대상자)

사업자 전자지갑의 가입대상은 한국은행 CBDC 활용성 테스트의 사용처로 선정된 법인 및 동 법인의 지점 기타 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로 한다.

제3조(가입 방법)

사업자 전자지갑의 가입은 대면으로만 할 수 있다.

제4조(보유한도 및 이용한도)

사업자 전자지갑의 보유한도 및 이용한도는 제한이 없다.

제5조(거래장소와 거래방법)

- ① 사업자는 은행이 제공하는 사업자용 웹페이지를 통해 예금을 예금 토큰으로, 또는 예금 토큰을 예금으로 전환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
- ② (오프라인) 사업자의 매장에서 고객이 예금 토큰을 이용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대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때에는 은행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단말기를 통해서 한다.
- ② (온라인) 사업자의 홈페이지, 모바일앱 등에서 고객이 예금 토큰을 이용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대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때에는 지급수단으로 예금 토큰을 선택하는 방식으로 한다.
- ③ 사업자는 테스트 종료 후 한국은행이 정하는 시점까지 제1항의 전환 신청을 할 수 있다.

제6조(거래의 취소)

- ① 제5조제2항의 고객이 재화 또는 용역의 취소, 반품 등의 사유로 예금 토큰 거래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는 사업자의 전자지갑에서 고객의 전자지갑으로 환불 금액에 해당하는 예금 토큰이 이전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② 사업자는 테스트 종료 후 한국은행이 정하는 시점까지 제1항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③ 사업자의 전자지갑에 예금 토큰이 부족하여 예금 토큰으로 환불할 수 없는 경우에는 현금, 계좌이체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고객에게 직접 환불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 ④ 사업자는 테스트 기간 종료, 사용처 선정 취소, 고객의 예금 토큰 계약 해지 등으로 인하여 고객에게 예금 토큰으로 환불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제3항의 방법으로 고객의 환불 요청에 따른 환불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7조(사업자 준수사항)

- ①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 고객에게 예금 토큰 거래를 하여야 한다.
 1. 예금 토큰 이용을 이유로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을 거절하거나 고객을 차별하여서는 아니된다.
 2. 사업자는 고객이 결제방법을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예금 토큰 이용방법을 안내하여야 한다.
 3.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예금 토큰 거래를 한 것으로 가장하거나 실제 대금을 초과하여 예금 토큰 거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4. 다른 사업자의 명의로 예금 토큰 거래를 하거나 사업자의 명의를 타인에게 대여

하서는 아니된다.

5. 예금 토큰 거래를 대행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사업자는 예금 토큰 거래 과정에서 알게 된 고객의 개인정보와 거래정보에 대하여 고객의 동의를 얻지 않고 이를 타인에게 제공·누설하거나 업무상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사업자는 단말기의 보안장치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고,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8조(은행 준수사항)

은행은 사업자가 상당한 주의의무를 다하여 확인하고 거래한 정상적인 예금 토큰 거래에 대해서는 고객의 전자지갑에서 사업자의 전자지갑으로 예금 토큰 이체가 지체없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은행은 제7조 제1항을 위반한 거래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을 수 있다.

제9조(도난, 분실 및 위·변조 휴대전화 등에 의한 거래에 대한 책임)

① 사업자는 도난, 분실 및 위·변조 휴대전화, 모바일 앱 등(이하 “휴대전화 등”이라 한다)에 의한 거래가 사업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경우 그 손해 또는 손실의 부담 등 책임을 진다.

② 제1항에서 사업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고객의 휴대전화 등이 고객 본인의 것이 아님을 알고서도 거래한 경우
2. 고객의 휴대전화 등이 고객 본인의 것이 아님을 쉽게 알 수 있었던 경우
3. 사업자가 도난, 분실 및 위·변조 휴대전화 등에 의한 거래에 공모, 가담 또는 협조한 경우
4. 기타 사업자의 현저한 부주의로써 도난, 분실 및 위·변조 휴대전화 등에 의한 거래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경우

제10조(사업자 수수료) 은행은 사업자 전자지갑 개설, 사업자의 예금 토큰 거래와 관련하여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제11조(가맹점 표지물) ① 사업자는 은행이 제공하는 예금 토큰 이용 가능 매장 표식 등을 매장 내외에 고객이 식별할 수 있도록 부착하여야 한다.

② 이 계약이 해지되거나 한국은행 활용성 테스트의 종료로 등으로 종료하는 경우 사업자는 제1항의 표식을 철거하여야 한다.

제12조(고객과의 분쟁)

① 예금 토큰을 이용하여 거래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분쟁은 사업자와 고객 간에 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사업자는 고객과 예금 토큰 거래로 인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분쟁의 해결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은행의 중재가 있는 때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3조(계약의 해지 등)

① 사업자가 사업자 전자지갑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서면으로 은행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은행은 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개별 통지하여 전자지갑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은행은 계약 해지 5영업일 전까지 사업자에게 개별 통지하여야 한다.

1. 사업자가 신청 서류의 기재사항을 허위로 작성한 경우
2. 사업자의 불량정보가 신용정보집중기관 등에 등록되는 등 서비스 이용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사업자가 이 특약 제7조 제1항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4. 사업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은행 또는 고객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5. 사업자가 부도, 파산, 회생절차신청, 폐업신고,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6. 사업자의 고객의 민원발생 정도가 심각하거나 영업의 특성상 은행에 피해가 발생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4조(특약 위반시의 책임)

- ① 사업자는 이 특약을 위반함으로써 은행 또는 고객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 ② 사업자와 고객 간 쌍방 귀책사유로 거래가 성립하지 않고 상호 원상회복 의무 등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은행은 고의 또는 과실이 없다면 거래불성립 및 원상회복과 관련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15조(양도금지 등) 사업자는 사업자 전자지갑 가입 명의를 타인에게 대여할 수 없고, 전자지갑 가입으로 획득하는 일체의 유형 및 무형의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 전매하거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할 수 없다.

제16조(기타)

사업자는 은행에 여러 개의 전자지갑을 개설할 수 있다.

사업자와 은행은 이 특약의 권리·의무를 신의에 따라 성실히 행사·이행할 것을 약속하며, 이 약정의 증거로서 2부를 작성하여 기명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